



서대문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『구청장에게 바란다』 민원회신 (성산로-역사문화미관지구)

2016.03.30.일 자 『구청장에게 바란다』 민원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.

1. 민원요지

- 민 원 인 : 이의수
- 민원요지
 - 연세대 주변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되어 있어 건물을 4층, 최대 6층까지 증축할 수 있으나, 왜 연세대나 세브란스병원은 그이상 지을 수 있는지?
 - 위락시설을 설치 할 수 없음에도 위락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...
 - 연세대는 10층이상 지을수 있으나 왜 주변 건축물은 6층이상 지을 수 없는지.
 -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건물에서 요식업(커피전문점 외)을 하게된 된다면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..

2. 답변내용

-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.
- 귀하께서 2016.03.30. 구청장에게 바다다에 『토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글을 올립니다.』 라는 제목으로 민원 글 올리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.
-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중 하나인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하 또는 6층이하로 정하고 있으며,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(단란주점, 유흥주점, 무도장, 무도학원, 카지노영업소 등) 용도의 건축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.
- 연세대학교(병원시설 포함)는 도시계획시설(학교)로서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의 건축규모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어 대학 내 일부 건축물은 6층이상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 합니다.
- 요식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 영업을 하는 업종으로서 휴게, 일반, 단란, 유흥음식점 등의 형태가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허가와 신고로 구분됩니다.
- 이 중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위락시설로 지정되어야 허가가 가능하고 다른 관련법에 의거 허가가 제한 될 수 있으며, 기타 업종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고 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.
- 또한, 관련법에 의거 어떠한 업종도 허가나 신고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할 시에는 무허가 영업으로 형사고발 등의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.

